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7. 6.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6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6월 29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3회(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00. 6. 30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허숙조)

- 가. 제안이유
  -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 중 처방전에 의해 원외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 신설코자 함.
- 나.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안 제3조)
    - 보건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자치구에서 지출한다.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중인 의약분업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게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우리구 보건수가조례 제3조제2항제7호에 의거 무료 진료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진료처방전을 교부하고 약은 지정약국에서 수령하며 약값은 조제 약국주가 진료처방전발급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청구내용을 확인 후 조제약국주에게 온라인 송금 처리토록 관련 조례 제3조에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133
번 호	

제출년월일 : 2000. 6. 29.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2000년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우리구 보건소를 이용해 온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무료진료 시책 중 처방전에 의해 원의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를 본인이 부담케 되어 노인복지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 신설코자 함.

2. 주요골자

- 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안 제3조)
  - 제3조제2항제7호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 의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자치구에서 지출한다.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 자치구 보건수가조례 제3조(진료비 면제)
  - 제2항7호 적용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 ※노인 : 65세 이상의 자

나.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다. 예산조치

- 2000년 하반기 소요재원은 시 특별교부금에서 자치구별로 지원하여 집행
- 2001년 이후 소요예산은 연도별로 시 예산에서 편성하여 자치구별로 지원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수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의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의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p>제3조(수수료및진료비의 면제)</p> <p>①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1종 보호대상자, 2종 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조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li> <li>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li> <li>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li> <li>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li> <li>5. 무의탁자의 진료</li> <li>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원</li> <li>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측정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li> </ol> <p>③ 노인복지법에 정한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장애인,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체력측정 및 골밀도 측정수수료는 구청장이 감면한다.</p> <p>&lt;신 설&gt;</p>	<p>④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신 설)								(3) 객실과 객실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1,000	3,000					
다. <u>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3,000	3,000	3,000		다.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3,000	3,000					
마. <u>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3,000	3,000	3,000		마.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 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삭제	삭제	삭제					
마의2. <u>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의 영업장에서 1회용품 무상제공 억제</u>				2,000	3,000	3,000		마의2~마의3 (삭제)											
마의3. <u>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u>				2,000	3,000	3,000		(1) 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억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억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2)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역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3) 매장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무상제공역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000	2,000	3,000
					(4)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코팅(도포)되거나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배포역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	2,000	3,000
					(5) 재활용품의 교환·판매 매장의 설치·운영(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000	3,000	3,000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에서 재활용품의 교환·판매매장 설치·운영	3,000	3,000	3,000	바. 삭제				

### 신 · 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				행				개				정				안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비 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사.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								사.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삭제	삭제	삭제					
								(1) 식품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 사용자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때				2,000	3,000	3,000					
아.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백화점·대형점·도매센터·쇼핑센터 및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은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업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예술관련 사업장에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2,000	3,000	3,000		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영 제12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제3호를 제외한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00	3,000	3,000					
								2.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준수 등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	700	1,000					

신·구조문 대비표 (제6조의2관련)

=====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 천원)

현행				개정안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부과대상	부과금액			비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이후	
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300	500	1,000		가. ~ 나. 삭제  (주) 현행과 같음				
나.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 이상 또는 1주에 1톤 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800	9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 일 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횟수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